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783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 윤준병 · 강준현 · 김윤덕

정동영 • 박희승 • 신영대

한병도 • 박홍배 • 조계원

허 영·위성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 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

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 또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의 제목 중 "공시"를 "공시 및 합리적 가격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 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를 "권익보호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 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 항(종전의 제2항) 중 "공시내용, 공시방법"을 "공시방법"으로 한다.

1.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 · 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 2.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품목별 거래가격 및 출하자 수취가격과 유통비용 등 가격정보
-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생산원가 이하로 가격이 결정되어 출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규정으로 위탁수수료 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지방도매법인 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10을 더한 범위에서 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도매인 도입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생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
	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
	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
	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
	구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시ㆍ
	도지사가 승인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
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	 시 및 합리적 가격 결정) ① -
~ 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권익보호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公示)하여야 한다.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公示)하
	<u> 여야 한다.</u>
<u><신 설></u>	
	물의 거래일자별・품목별 반
	입량 및 거래물량
<u><신 설></u>	2.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
	물의 거래일자별・품목별 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 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 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래가격 및 출하자 수취가격과 유통비용 등 가격정보

-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 업내용
-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 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생 산원가 이하로 가격이 결정되 어 출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 지 아니하도록 농수산물의 가 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현행과 같음)

2	<u>제1항제1호·제2호·제4호</u>
<u>및</u>	<u> </u>

한다.

<신 설>

-----.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지방도매법인 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10을 더한 범위에서 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장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
	의 5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
	천분의 50
<u><신 설></u>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
	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
	이 정하되, 제4항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